북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북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안내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준수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본교의 교훈인 '애국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을 스스로 실천하여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는 '바람직한 북일 학생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4.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18조의4, 제20조, 제32조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 학생 생활

제4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사립학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학생의 권리

제6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

제7조【신체의 자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9조【표현과 집회의 자유】[2)]

①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의 허용된 공간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 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받을 권리】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여 진행한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

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8조

제16조【의견을 제출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③ 학생은 학칙 제·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권리】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 인권이 보장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0조【건강을 보장받을 권리】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빈곤가정 학생, 장애 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 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장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제23조 【기본행동】

① 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며, 욕설·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제24조 【수업 태도】

①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5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생은 휴식 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받는다.

② 여가시간에 교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외출이 필요한 경우 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26조 【용모】

① 학생은 자신의 용모[3]에 관하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7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2. 인권침해 또는 성적 수치심·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28조 【소지품 검사】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3) 두발, 복장, 화장, 장신구 등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 시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4)

①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0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음란, 도박, 불법 유해매체를 사용 또는 공유하거나 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제31조【신체의 자유】 5)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32조【학생자치활동】 자율, 존중, 연대, 협력 등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실시한다.

제33조【학생인권기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를 둔다. 학생인권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담당자
총괄책임관	교감
운영책임관	안전생활부장

4)「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제11조 3항

5)「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제6조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안전생활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지원부장, 각 학년 부장, 전문상담교사로 하되 안전생활부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하되 찬반이 같을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를 참석시켜 학생의 신상 및 사안에 관한 제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⑤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 【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를 제외한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교권 침해 사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조치 및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와 처분 방안

제6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36조 【기본품행】 본교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과 북일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자신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9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형제와 같은 우애를 쌓는다.

제40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정신, 성 및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때나 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해당 학년 부장, 학교폭력, 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상담을 희망할 때 담임교사나 안전생활부장, 안전생활부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제41조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동아리의 등록은 매년 3월 초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창체활동지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교사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아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창체활동지원부 동아리 업무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동아리는 평일 및 휴일에 진행되는 외부 행사에 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 할 수 있으며, 해당 동아리의 지도교사의 인솔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동아리는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⑥ 지도교사는 동아리 활동 참가 학생의 활동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동아리를 해체할 수 있다.

1. 동아리 회원이 10인 미만이거나 학기당 3회 미만의 모임을 한 경우
2.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체행동을 한 경우
3.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

⑧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기에서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42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악기 보관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실의 이용 시간과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43조 【복장】 북일고등학교 학생의 복장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때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동아리 뱃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 및 과도한 자기 표현(문신, 피어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④ 신발은 용도에 맞고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한다.

⑤ 기타 용의복장과 관련해 규정 위반과 관련된 교내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가 발

생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⑥ 전체조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신체적 여건에 따라 교복과 생활복 혹은 체육복을 입도록 한다.

⑦ 등·하교 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복을 겸할 수 있다. 생활복과 학교 체육복은 실내 생활과 체육시간에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절기에는 방한을 위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외투는 동복 자켓을 탈의 상태에서 착용할 수 있다.

⑧ 교복 위 외투(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⑨ 기숙사생은 등하교 시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으며 통학생은 등하교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한다. 단, 폭우나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실내화 착용 등하교를 제한할 수 있다.

⑩ 평일(18시 이후) 및 휴일 자기주도학습 시 학생의 복장은 자유복(단, 수면 바지, 잠옷, 언더웨어 등은 제외)을 허용한다.

제44조 【두발】 북일고등학교 학생의 두발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② 두발 길이는 목 부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탈색과 염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새치 또는 개인 진로진학과 관련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허용할 수 있다.

③ 과도한 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악성 곱슬머리 또는 두발의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펌과 개인 진로진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부분 허용할 수 있다.

제45조【용의】 북일고등학교 학생의 용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용모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귀고리나 반지 및 금속팔찌와 같은 장신구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② 문신은 전면 불허한다. 단, 상처를 가리기 위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③ 색조화장(눈, 입술)을 해서는 안 된다.

④ 피어싱은 금지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액세서리는 금지한다.

⑤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제4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정규 교과 외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 시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기타 교사의 허락이 필요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47조【전자기기 사용】

①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은 담당교과 교사 재량으로 수업 중 허용할 수 있다.
② 평일 자기주도학습 중 전자기기 사용은 각 학년별 학교공동체 협의 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휴일 자기주도학습 중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 시 전자기기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학습목적 이외(게임 및 동영상 등)의 사용 시 제재할 수 있다.
1. 학습목적 이외의 전자기기 사용 관련 1차, 2차 적발 시 해당 내용을 담임에게 안내해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2차 경고 후 재적발 시 보호자 소환 후 담임교사는 상담을 진행하고 전자기기는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제48조【생활방역 준수 관련】

①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미준수 5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생활방역 관련 미준수 5회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절 출결 사항

제49조 【출결사항】

①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② 결석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⑤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⑥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⑦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③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3절 교외생활

제50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북일고등학교 학생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상호 간의 인사 등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에 방문하거나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담임교사 혹은 학교장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학생들은 교통 법규와 교내 접근 금지 구역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의 복용 및 흡입, 도박(사이버 도박 및 스포츠 토토 등)을 금한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⑨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킥보드 포함) 및 자동차 운전을 금한다.

제51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습관, 태도, 이상한 행동 등

제4절 정보통신

제52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사이버 도박 및 스포츠토토 등 포함)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53조 【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 비치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게임, 동영상 시청 중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교내외에서 보행 중 안전을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며 반드시 정지 상태 또는 안전 장소로 이동 후 사용해야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수업, 자기주도학습, 방과후수업 등)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학생회

제54조 【명칭】 본 회는 북일고등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55조 【목적】 본 회는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교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개인과 학교 모두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제5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일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57조 【활동】 본 회는 제5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학교 내외의 여러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고장의 전통,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5. 학생 복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6.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

제58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무를 지닌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3.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니며 활동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기구】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학생총회
2. 학생대의원회의
3. 중앙운영위원회
4. 동아리연합회
5. 학년 학생회 및 반 학생회
6. 자문위원회

제60조 【학생총회 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다.

제61조 【권한】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승인
2. 총학생회장단 선출 및 불신임 의결
3. 이 회의 존립에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결
4. 기타 이 회의 활동에 관계된 중요 사항의 토의 및 의결

제62조 【회의 및 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학생총회의 안건 및 개최 일시와 장소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6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인 경우에는 선임학년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64조 【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5조 【학생대의원회 구성】 학생대의원회의는 이 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기타 임원 및 각 학급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66조 【의장 및 서기】 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인 경우에는 선임학년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2. 의장은 서기를 지명한다.

제67조 【업무와 권한】 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2. 임시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3. 학생회비의 책정
4. 학생회 사업 계획 의결 및 결과 보고 승인

5. 학생회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
6.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토의
7. 정·부학생회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8. 집행부서장 임명 동의 및 탄핵
9.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
11. 학교 행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채택
12. 기타 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68조 【의무】 학생대의원회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생 대표자들은 회의 안건 공고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 및 견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접수 6일 이내에 토의에 들어가야 한다.

제69조 【회의 및 소집】 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학생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 및 개최 일시와 장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장이 공고한다.

제70조 【의결】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전체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1조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서장, 학년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년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학년별로 반 학생회장 대표 2인이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2조 【업무와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1. 학교 연간 사업 계획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2.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을 집행하며 학생대표자회의에 결산 보고를 한다.
4. 학생대표자회의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5. 학교 측에서 학생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결정할 때 학교 측 의결 기구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73조 【집행부】 중앙운영위원회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 내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집행부서장은 아래와 같이 임명된다.

1. 기획부 : 학생회 사업의 계획 및 조정 활동
2. 디자인부 : 학생회 사업 지원 및 홍보물 제작 활동
3. 봉사부 : 교내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4. 문화부 : 축제 주관 및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활동
5. 홍보부 : 학생회 사업 홍보 및 학교 안내와 홍보 활동
6. 정보부 : 교지 및 선전 매체 발간
7. 복지부 : 학생 복지에 관한 활동
8. 체육부 : 체육 시설 및 체육 행사에 관한 활동
9. 경제부 : 학생회 사업 예산 편성 및 회계
10. 환경부 : 교내 환경 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11. 선도부 : 교내 질서 유지 및 각종 봉사 활동

② 집행부서장 및 서기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각종 특별위원회는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한시적 위원회의 성격으로 설립되며, 운영위원 및 기타 학생대표자회의 위원 일부를 포함한 지원자들로 구성한다.

제74조 【반 학생회 구성】 반 학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반 학생회는 각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부서장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정부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매년 3월과 8월 중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학급의 정/부반장과 총학생(부)회장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인 경우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선거 시기, 선거 방법은 회장과 같다.
5.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75조 【학급회의】 학급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 의결한다.

① 학급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학급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탄핵
2. 총학생회 사업의 실천사항
3.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발의
4. 기타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6조 【학년 학생회】 학년 학생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년 학생회는 각 학년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학년학생회장, 부회장은 매년 3월 중 각 학년 학급의 회장들이 호선한다. (단, 천재지변 및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 별도의 일시를 정하도록 한다.)
3. 학년학생회장은 반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7조 【구성】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부장(회장)으로 구성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각 동아리의 회장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78조 【업무】 동아리연합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에 관한 사업을 계획·실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관련 사업을 상정할 수 있고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새로운 동아리 설립 인준을 처리한다.
3.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의 예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학생회 재정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각 동아리에 분배한다.

제79조 【운영 규칙】 동아리연합회는 별도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한다.

제80조 【지도위원회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 및 졸업생으로 7명 내외로 한다.

제81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지도
2.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3. 총학생회 재정에 관한 자문 및 지도
4. 총학생회 결산 감사 지도
5. 기타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제82조 【운영비】 본 회의 재정은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까지로 한다. 단, 학교의 회계 업무의 필요를 위하여 학년도 말에 임시 결산을 한다.

제84조 【예산】 본 회의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작성하여 지도의원회의 자문과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된다.
2. 제1호의 시일 이내에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직전 회계연도에 따르는 재정 집행을 결정 할 수 있다.
3. 예산안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85조 【결산】 결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정감사위원회의 감사, 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및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확정된다. 확정된 결산은 공고되어야 한다.

제86조 【감사】 본 회의 재정 감사는 학생 대표자 2인, 자문위원 2인으로 구성된 재정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7조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의 선출·임명·임기】 학생회 임원의 선출·임명·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규정에 의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하되, 천재지변 및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사운영 변동 시 별도의 일시를 정해 선거를 진행하도록 한다. 회장은 2학년에서, 부회장은 1, 2학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3.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이 지명한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5.총학생회장이 유고일 경우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이면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고,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학생회장이 자격을 잃었을 때는 보궐선거 공고와 후보 신청 후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6.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별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88조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정/부회장의 자격】

학생회 임원 및 학급 정/부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봉사 정신과 통솔력이 있는 자
2.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인 자
3. 임기 중 징계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다.
4.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89조 【학생회 임원 선거】 학생회 임원 선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① 선거 원칙

1.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로 하되, 단독 출마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2. 1, 2학년 부회장 출마자가 없으면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선거에 따라 선출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 관리 사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15명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2. 학급의 선거 관리는 각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담당한다.

③ 입후보 등록

1.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은 선거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선거 공고일 현재 전체 재학생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첨부-1)
2.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내에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추천서(첨부-2)와 입후보자 신청서(첨부-3)를 제출해야 한다.
3. 입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첨부-4)를 제출해야 한다.
4. 후보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5. 천재지변 및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사운영 변동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생활부장, 안전생활부 학생회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0조 【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 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를 방송으로 전 학생에게 알리고, 소정 양식에 따른 입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제작 부착한다.

② 후보자 지원 발표 및 후보자 소견 발표

1. 선거 일정에 따라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다.
2. 소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으로 한다.
3. 후보자 소견 발표는 6분 이내로 제한하며, 제한 시간이 되면 신호음으로 알리며 고지 후 1분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한다.
4. 각 후보자의 찬조 연설 및 후보자의 소견 발표 원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거쳐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후보자의 소견 발표 내용이 제출한 원고 내용과 다르며,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될 때에는 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

1.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공고 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2. 선거 운동은 교내에서만 해야 한다.
3. 교실 순회 선거 운동은 허용된다. 단, 교실당 1회에 한하며, 선거 운동원 6인 이하만을 대동할 수 있다.
4. 피켓 제작을 허용하되, 피켓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한다.
5. 공식적 벽보 외의 어떤 유인물도 제작·배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금지 사항
   - 금품, 향응 제공은 금한다.
   -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 증거 없는 사실로 선동하는 발언은 금한다.

④ 입후보자가 규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한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91조 【투표·개표 및 당선·공고】 투표·개표 및 당선·당선 공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사운영 변동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생활부장, 안전생활부 학생회 담당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투표와 개표

1. 투표는 학급 또는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2. 투표를 위한 제반 준비는 안전생활부에서 담당한다.
3. 투표는 각 학급 선거관리위원의 지도·감시하에 실시하되, 비밀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② 투표의 완료 및 당선자 확인

1. 각 학급의 투표 완료 후 학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생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안전생활부에 완료 사실을 알린다.

③ 당선자 결정 및 당선자 공고

1. 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안전생활부장에게 보고한 후 학교장의 결재 후 당선자를 공고한다(이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함께 공고한다).

제92조 【회의 정족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3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은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학생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8장 징계
제1절 일반 규정

제94조 【징계 조치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와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95조 【징계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발생한 건의 경우에는 북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별도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한 후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적절한 징계를 부과한다.

제96조 【재심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 【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근거함.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안에 따라 학생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와 같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① 교내 봉사
② 사회 봉사
③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④ 퇴학

제98조 【생활교육 조치의 기간 및 방법】 제9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내 봉사

1. 해당 교칙 위반자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
2. 지도 내용 : 담임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 실시, 당해년도 교내상 수상 및 다

음 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② 사회 봉사

1. 교칙 위반자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
2. 지도 내용 : ①의 지도 내용 + 3개월 이내의 여송학사 퇴사

③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1. 지도 내용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필요할 때 ①,②,④의 징계 조치와 함께 ③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1. 지도 내용 : ①의 지도 내용 + 여송학사 영구 퇴사

⑤ 퇴학 : 본교 4대 중벌 항목 중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후 퇴학 조치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처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2. 퇴학처분 시 충청남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3.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한다.
4. 퇴학처분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 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이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도록 노력한다.
5.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6. 위 5.의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해당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학생에 대한 조치

1.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학생회 및 학급 정/부반장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교내상 수상과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거나 기숙사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학생은 여송학사를 퇴사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벌점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여 2-3개월 범위에서 퇴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거나 기숙사를 재입사한 학생이 누적벌점 10점 이상이면 영구 퇴사 조치한다.
4. 본교 4대 중벌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4대항목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음주,흡연			○	○	○
도박,절도			○	○	○
왕따,따돌림			○	○	○
폭력			○	○	○

제99조 【징계의 절차】

① 모든 징계는 담당 교사의 진술서와 담임교사의 학생 신상에 관한 의견진술을 토대로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때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참석시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루어짐을 확인시키도록 한다.

③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담당교사는 징계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 징계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학생 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④ 보호자가 징계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청할 때는, 1주일 이내에 재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협의를 한 후 징계를 다시 확정 할 수 있다.

⑤ 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산정하며 학교장 부재 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교감)이 징계권을 대행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필요할 때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부치어 심의케 할 수 있다.

제100조 【심의 확정】 징계 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01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02조 【선도처분 유보】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각종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3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낮추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4조 【학생 징계의 효력】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년도의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자치회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05조 【징계의 해제】 징계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벌되며, 해벌은 징계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징계 담당 교사 및 선도 교사와 협의하여 안전생활부장 교사가 학교장에게 해벌을 건의

하여 결재를 받아 해벌될 수 있다.

제2절 각칙 규정

제106조【예절】

1. 언행이 불손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교사에게 불손한 학생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5.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된 학생

제107조【준법】

1.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
2. 본교의 용의복장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학생
3. 학습 목적 이외의 부적절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된 학생
4. 학교 도서관 내 도서를 분실하거나 제때 반납하지 않는 학생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7.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8.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0. 경찰에서 구속 석방되거나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3. 무면허의 상태로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등하교하는 학생
14. 절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련된(방조 등) 학생

제108조【수업】

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자율학습 포함)을 방해한 학생
3. 수업을 거부한 학생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5. 시험을 거부한 학생
6.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7.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제109조 【출석】

1. 미인정결과, 미인정외출, 미인정조퇴를 한 학생
2. 미인정결과, 미인정외출,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3. 무단가출 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른 학생
4.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5. 무단으로 학교나 기숙사를 이탈한 학생

제110조 【흡연 및 약물】

1. 교내/외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
2. 교내/외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학생
3. 음주 및 흡연, 환각제 등을 사용한 학생
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5. 흡연 및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된 물건(라이타 등)을 소지하다 적발된 학생

제111조 【폭력】

1.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학생
2.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 사이버 혹은 학교에서 타인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성폭력, 언어폭력, 생일기념 폭력 등)에 가담한 학생
4.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가담한 학생
5.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제112조 【퇴폐행위】

1. 도박을 한 학생
2. 상습적으로 도박(온라인 도박 등 포함)을 한 학생
3. 학생 출입 금지된 유해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된 학생
4.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5. 불량 동영상을 시청 및 소지한 학생
6.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제113조 【집단행위】

1.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제114조【기타】

1.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상시킨 학생
2. 학교 및 인접 주거지역 울타리를 월담한 학생
3. 상기 항목에는 없지만 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행위를 저지른 학생(장발, 짙은 화장, 문신, 피어싱 및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기 표현 등)
4. 인화성 물질(물건)이나 점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물건)을 소지한 학생
5. 학교 기물 파손한 학생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종한 학생

제115조【조치사항】 위 제106조【예절】부터 제114조【기타】관련 규정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된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부 목적은 징계만을 위함이 아니며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을 위한 교육적 목적 달성에 있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상담지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과 같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4. 처분 결정 시 징계 아닌 교육 목적의 처분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징계 아닌 교육 목적의 처분은 징계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다.
5. 상기 각 조항에는 없지만 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행위에 속한 학생 행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9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116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설치·기능】

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전담기구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 학생의 보호
3.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7조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곧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① 전담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전담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담기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특히 전담기구 구성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9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운영】

① 전담기구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담기구의 위원장은 안전생활부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 1인을 전담기구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로 지명한다.

④ 전담기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20조【장애 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1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 【 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피해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때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안전생활부장 혹은 안전생활부 학교폭력 담당 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 학생·폭력 가해 학생은 본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을 따른다.

제7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124조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125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요청
2.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
3. 보호자의 1/3 이상의 요청
4. 학교장의 요청

제125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실천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학생 의견수렴은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학급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학생의견을 종합 및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학생 의견수렴 방법이 불가한 긴급 사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6조 【교육과 연수】

①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한다.

제127조 【학교장 결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학교장 결재 후 공포 및 정보 공시한다.

제12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2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고, 관련 상위법 개정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일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학교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보고 후 부칙에 관련 학교생활규정 일부 수정 및 삭제 내용을 기재하고 적용 ·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제정일】

본 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제정 공포한다.

[붙임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학생과의 관계]</td></tr>
<tr><td>대상학생</td><td></td><td>소속</td><td colspan="2">○○학교
(　　)학년 (　　)반 (　　)번</td></tr>
<tr><td>조치결과</td><td colspan="5"></td></tr>
<tr><td>조치결과가 내려진 날</td><td colspan="5">20　년　　월　　일</td></tr>
<tr><td>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td><td colspan="5">20　년　　월　　일</td></tr>
<tr><td>청구의 목적 및 이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북일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td></tr>
</table>

[붙임2]

<table>
<tr><td colspan="5"><u>징계(퇴학) 재심 청구서</u></td><td rowspan="3">접수</td><td>번호</td><td>-</td></tr>
<tr><td colspan="5"></td><td>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5"></td><td>성명</td><td></td></tr>
<tr><td rowspan="3">청구인</td><td>성 명</td><td></td><td>연락처</td><td></td><td>관계</td><td colspan="2">본인, 보호자</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3">[보호자의 구체적 관계]</td></tr>
<tr><td>퇴학생</td><td>성명</td><td></td><td>전소속</td><td colspan="3">( )학교 ( )학년 ( )반</td></tr>
<tr><td>피청구인</td><td>퇴학조치 학교명</td><td colspan="2">( )학교</td><td>소재지</td><td>( )구
( )동</td><td>학교장</td><td></td></tr>
<tr><td colspan="2">퇴학조치 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2">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청구 이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징계(퇴학)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재심청구인) : ㊞
충청남도교육감 귀하</td></tr>
<tr><td colspan="8">◎참고사항 : 1.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의 ②)</td></tr>
</table>